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227
----------	-------

발의연월일 : 2025. 11. 13.

발 의 자 : 오세희 · 김병주 · 이훈기
박희승 · 전진숙 · 박균택
김남희 · 위성곤 · 이주희
박지혜 · 정진욱 · 장종태
강준현 · 김우영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주요 국가들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면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임.

특히, 미국은 자국법을 근거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한 보조금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은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 등을 마련함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다른 국가가 자국의 법령에 따라 행한 무역·통상 관련 조치로 피해를 입은 기업도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으로 포함하고, 정부로 하여금 통상위기 대응을 위한 긴급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등 통상환경 변화로 인한 피해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14조 등).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정부가 체결한 통상조약”을 “통상조약”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통상조약 등 무역·통상에 관하여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와 체결한 조약·협약·협정·각서 등의 국제적 합의로서”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를 “통상조약 등의 이행이나 통상위기로”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붕괴 등”을 “붕괴, 주요 교역국의 무역·통상 관련 일방적 조치 등 통상위기를 포함한”으로 한다.

가.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통상조약 등 무역·통상에 관하여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와 체결한 조약·협약·협정·각서 등의 국제적 합의

나. 다른 국가가 자국의 법령에 따라 행한 무역·통상 관련 조치
1의2. “통상위기”란 주요 교역국의 무역·통상 관련 일방적 조치, 국

제적인 분쟁·전쟁·재난·제재 등 통상환경의 중대한 변화로 국내 산업 및 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황을 말한다.

제14조제3항제2호다목 중 “상대국의 무역제한 등의 조치로”를 “상대국의 무역제한이나 그 밖에 무역·통상 관련 일방적 조치 등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전단 중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내외 유통망 확보 및 홍보·판매 지원
2. 국외 대체시장 개척 및 수출 마케팅 지원
3. 국내외 전시·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통상위기 대응을 위한 긴급지원계획 등) ① 정부는 통상위기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통상위기 대응을 위한 긴급지원계획(이하 “긴급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긴급지원계획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긴급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 중

양행정기관의 장, 유관기관의 장, 그 밖에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통상위기지원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수립된 긴급지원계획과 그 시행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긴급지원계획의 수립·시행과 제3항에 따른 통상위기지원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u>정부가 체결한 통상조약</u> 등의 이행으로 인하여 부정적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또는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기업과 그 소속 근로자 등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u>통상조약</u> ----- ----- ----- ----- ----- ----- ----- ----- -----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상조약 등”이란 「 <u>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u> 」 제2조제1호에 따른 통상조약 등 무역·통상에 관하여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와 체결한 조약·협약·협정·각서 등의 국제적 합의로서 산	제2조(정의) ----- -----. 1. ----- <u>다음</u> <u>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u> <u>는 것으로서</u> ----- ----- ----- -----.

업통상부장관이 외교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
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2. “통상변화대응”이란 제조업
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
비스업(이하 “통상대응지원업
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기

가.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
2조제1호에 따른 통상조약
등 무역·통상에 관하여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와
체결한 조약·협약·협정
·각서 등의 국제적 합의
나. 다른 국가가 자국의 법령
에 따라 행한 무역·통상
관련 조치

1의2. “통상위기”란 주요 교역
국의 무역·통상 관련 일방적
조치, 국제적인 분쟁·전쟁·
재난·제재 등 통상환경의 중
대한 변화로 국내 산업 및 기
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
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황을 말한다.

2. -----

업 또는 그 소속 근로자 등이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하
여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우
려되는 부정적 영향(이하 “통
상영향”이라 한다)을 예방하
거나 그 영향을 극복 또는 최
소화하는 데에 필요한 활동을
말한다.

3. “통상피해대응”이란 통상대
응지원업종을 경영하는 기업
또는 그 소속 근로자 등이 국
제적 공급망 붕괴 등 통상환
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인
하여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
실한 피해(이하 “통상피해”라
한다)를 최소화하거나 그 피
해를 극복하는 데에 필요한
활동을 말한다.

제14조(통상피해지원기업의 지정
등) ①·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
상피해지원기업으로 지정받으
려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
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통상조약 등의 이행이나
통상위기로-----

-----.

3. -----

-----붕괴, 주요 교
역국의 무역·통상 관련 일방
적 조치 등 통상위기를 포함
한-----

-----.

제14조(통상피해지원기업의 지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생 략)

2. 제1호에 따른 통상피해의 주
된 원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나. (생 략)

다. 상대국의 무역제한 등의
조치로 인한 교역환경의
현저한 악화

라.·마. (생 략)

④ ~ ⑦ (생 략)

⑧ 산업통상부장관은 통상피해
를 최소화하거나 그 피해를 극
복하기 위하여 제7항에 따른
지원 외에 추가적인 지원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조
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 설>

<신 설>

1. (현행과 같음)

2.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상대국의 무역제한이나
그 밖에 무역·통상 관련
일방적 조치 등으로-----

라.·마. (현행과 같음)

④ ~ ⑦ (현행과 같음)

⑧ -----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
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후단 삭제>

1. 국내외 유통망 확보 및 홍보
· 판매 지원

2. 국외 대체시장 개척 및 수출
마케팅 지원

<신 설>

<신 설>

⑨ (생 략)

<신 설>

3. 국내외 전시·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항

⑨ (현행과 같음)

제18조(통상위기 대응을 위한 긴

급지원계획 등) ① 정부는 통

상위기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통상위기 대응을 위한 긴급지

원계획(이하 “긴급지원계획”이

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긴급지원계획은 산업통상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여

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긴급지원

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유관

기관의 장, 그 밖에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통상위기지원단

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수립된

긴급지원계획과 그 시행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긴급지원계획의 수립·시행과 제3항에 따른 통상
위기지원단의 구성·운영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